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실이 우려되는 회원조합 증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수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회원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과 상시적인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재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임감사 의무선임제 신설(안 제46조제3항 및 제5항)

회원조합의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대형 조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상임감사의 경우에도 현행 상임이사 선출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나.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안 제50조제1항)

상임이사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업무성과 평가와 관련된 단서규정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5. ~ 2026. 1.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를 “두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단서 중 “사람 중”을 “사람 중에서, 상임감사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중 1명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감사를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별수협에는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를 “이사”로, “3년으로 하되”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장 및 비상임이사: 4년

2. 상임이사: 2년

3. 감사: 3년

제54조제2항 중 “제46조제3항제1호”를 “제46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46조제6항·제7항”을 “제46조제7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46조제6항”을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 선출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임이사 임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략)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외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⑥ (생략)

-----.

③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중 1명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감사를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별수협에는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 사람 중에서, 상임감사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중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⑦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4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⑨ (생략)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생략)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

같음)

⑧ ----- 제5항-----

-----.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이사-----
-----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 . <단서
삭제>

1. 조합장 및 비상임이사: 4년

2. 상임이사: 2년

3. 감사: 3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6조제4항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

1호

제168조(준용규정)

제46조제7항·제8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31